



#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도입과 보험회사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요약

■ 지난 7월 17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가 도입되었음.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보험사, 증권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모집업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퇴직연금 모집인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퇴직연금제도 및 운용사항을 설명할 수 있고(설명 업무), 퇴직연금제도를 소개하거나 중개할 수 있으며(소개 및 중개업무), 기업 또는 개인의 질문사항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전달(질의사항 전달업무)할 수 있음. 이러한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도입은 퇴직연금 사업자중심 본체 영업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통한 개인영업중심 영업으로 영업행태가 전환될 가능성이 커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보험회사는 약 32만 명(투자권유대행인의 약 8.6배)에 이르는 보험설계사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적극 활용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영업경쟁력을 보다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에 특화된 모집인 양성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가 도입됨.

- 현행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모집업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모집업무를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규정을 모집인 업무범위, 모집인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 범위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모집인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모집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표 1〉 퇴직연금 모집인의 업무 내용

구분	업무 내용
제도 설명 업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하려는 자에게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업무
소개 및 중개업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업무
질의사항 전달업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의 질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답변을 전달하는 업무

- 근퇴법 시행령은 모집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퇴직연금제도 설명업무, 소개 및 중개업무, 질의사항 전달업무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 퇴직연금 모집인 요건

-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이 고용노동부장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와 서면계약으로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퇴직연금 모집인이 됨.
  - 퇴직연금 모집인이 되는 요건: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1차 요건) → 노동부장관인정 교육과정 이수(2차 요건) →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3차 요건)

〈표 2〉 퇴직연금 모집인의 요건

구분	세부 내용	
모집인 요건 (근퇴법 시행령 제29조)	1차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li> <l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li> </ul>
	2차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3차 요건	퇴직연금사업자와의 서면계약으로 모집업무 위탁

- 따라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았다 해서 퇴직연금 모집인이 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퇴직연금 모집인이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부여됨.
  - 투자권유대행인(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 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에 합격한 후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증권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있는 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6조)
    - 펀드투자대행인은 증권펀드(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부동산펀드에,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주식(국내/해외), 채권, RP, CP, 원금보장형 ELS/DLS에 투자권유가 가능함.

〈표 3〉 모집인 교육과정 및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 (제30조 제2항 관련)

구분	세부 내용
교육과목	①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감독규정 해설 ③ 퇴직급여제도 관련 노동법    ④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법 ⑤ 모집인의 준수사항
교육기관	등록업무 위탁 수행기관
이수기준	교육시간 20시간 이상, 이수검정시험 평균 60점 이상(각 40점 미만은 과락)
교육과정 주기	분기별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 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유사한 업무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2년마다 6개월 이내에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하도록 규정함.

### ■ 퇴직연금 모집인의 준수사항

- 퇴직연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에게 엄격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퇴직연금 모집인 이외의 명칭 사용 금지, 허위사실에 근거한 모집업무 수행 행위 금지, 모집업무의 위탁범위를 벗어난 업무수행 금지, 둘 이상의 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 체결 금지,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금지
- 또한 퇴직연금 모집인은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설정하려는 사용자 등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함.

-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을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등록시켜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확산 및 음성적 퇴직연금 모집업무 수행에 따른 불안전판매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 중심 본체 영업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통한 개인영업 중심으로 영업행태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

〈표 4〉 보험설계사 및 투자권유대행인 수

보험설계사(A)			투자권유대행인(B)	전체(A+B)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계		
156,835명	170,128명	326,963명	38,000명	364,963명

주: 생명보험설계사 수는 2012년 4월 말 기준, 손해보험설계사 수는 2012년 3월 말 기준, 투자권유대행인수는 2012년 6월 말 기준임.

- ■ 이에 보험회사는 약 32만 명(투자권유대행인의 약 8.6배)에 이르는 보험설계사를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적극 활용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영업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설계사는 연금상품의 판매 노하우, 은퇴설계서비스의 제공 능력 등이 뛰어나 이들을 통해 소규모 기업 및 자영업자의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에 특화된 모집인 양성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임. [kiri](#)